■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17. 2. 3.>

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(제112조제4항 관련)

가. 한국은행·한국산업은행·한국수출입은행·중소기업은행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나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
다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라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바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
사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아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자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
차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
카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
타. 「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